

2023년도 제1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7. 19.(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노정동(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원, 최진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6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268건(안건번호 제2023-95859호~9906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95859호(순번 1번)는 ☒☒☒ ☒☒☒에 악보를 게시한 사안으로, 유료로 판매되는 원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고 있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95860호~95861호(순번 2번~3번)는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95862호~95874호(순번 4번~16번)는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21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443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3-15702호~16144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443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6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김민영 주임: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민영 주임: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12쪽~2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민영 주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노정동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김민영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4,26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 ▷▷▷에 악보를 요청하는 질의글에, 피아노 연주곡 악보를 제공하는 답변글이 게시된 사안임. 총 1개 게시

물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순번 1번은 ♣♣♣ ♣♣♣에 학습용 피아노 연주 악보나 사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질의글에, 피아노 연주곡 악보를 제공하는 특정 답변글에 관한 사안임. 심의대상 답변글에는 악보 유통 사이트의 출처가 표기된 피아노 연주곡 1곡에 대한 악보 전부가 게시되어 있음. 해당 악보는 악보 유통사이트에서 합법 유통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심의대상 답변글의 게시자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단순 학습 목적의 질의글에 답변으로 위 악보를 게시하고 있으나, 합법 판매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악보 전부를 게시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는 않으나 작다고 보기 어려움.
정리하면, 심의대상 답변글의 게시자는 유료로 판매되는 원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고 있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나, 단순 학습 목적의 질의글에 답변으로 위 악보를 이용하고 있는 점,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시정권고시 답변글 게시자에게만 조치가 취해지는지?

- 김민영 주임: ●●● ●●●의 특정 답변글에 대하여 삭제·전송중단 집행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2023. 7. 14. 사무처에서 □□□ 측에 확인한 결과, 답변글 게시자에게만 조치가 취해진다는 답변을 받음.
- B 위원: 저작권 침해가 명확한데 경고의 시정권고만으로 검토한 이유는 무엇인가.
- 김민영 주임: ★★★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을 받기 전에 보고서가 작성되어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권고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임.
- C 위원: 그렇다면 순번 1번은 유료로 판매되는 원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A, B,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중인 사안임. 총 5개 게시물임.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순번 2번은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으며, 최신 대체 URL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것이 예상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순번 2번 내지 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된 직접링크 4개 모두 2023년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검색결과 제한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준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불법복제물의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소재한 링크게시물의 경우 해당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원천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소재한 경우에는 원천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하고 있음.

정리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며,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아니하므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순번 2번~3번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3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16번은 실명 3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등 웹사이트에서 방송물, 출판물, 만화저작물 등을 각 제공 중인 사안이며, 총 46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순번 4번 내지 16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1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민영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7번~320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4,216 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방송, 영화, 만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순번 17번~3209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7번~3209번 중 이미 삭제 또

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95859호(순번 1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95860호~95861호(순번 2번~3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95862호~95874호(순번 4번~1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95875호~99067호(순번 17번~320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1쪽부터 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702호~16144호(순번 1번~443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이 제1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8. 2.

분과위원장 노정동

위원 김경숙

위원 김 원

위원 최진원